

과천시공고 제2024-1204호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
2024년 11월 6일

과천시장

1. 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

대상지역			면적(km ²)	비 고
			지정면적	
경기도	과천시	과천동	2.23	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506호

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4년 11월 10일 ~ 2029년 11월 9일
허가구역 지정일자 : 2024년 11월 10일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0m ² 초과
	상업지역	150m ² 초과
	공업지역	150m ² 초과
	녹지지역	100m ² 초과
	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	60m ² 초과
도시지역 외의 지역	농 지	500m ² 초과
	임 야	1,000m ² 초과
	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	250m ² 초과

4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에서 확인

* 뉴스·소식-공지사항-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
※ 국토부 홈페이지 공고로 별도 첨부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, 허가구역 대상여부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

5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1 참조

※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